

『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4일

나. 발 의 자 : 김재우, 김낙관, 김춘남, 송용자,
안장환, 안주찬, 윤종호, 이선우,
이지연, 장세구, 홍난이 의원 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2월 3일

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재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지역사회에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2조)
-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보조금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봉사회 활동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7조, 제8조, 제2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1. 14. ~ 1. 20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숙

- 본 『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은
 -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」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아울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재난구호,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. 다만, 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